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357 / 전송

문서번호 계계 58422-736

시행일자 1994. 11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
도시계획국장	전결	
재개발과장	전결	법무담당관 행정계장 사업2계장
계획계장	전결	
기안	방효만	협조

제목 도시계획(도심지재개발구역지정)입안 및 주민공람공고

1. 우리시 관내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일대(청량리구역) 도심지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'94.제8차('94.10.18)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바, 전농동624, 용두동 10번지일대등 21,445.9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어 별안과 같이 도시계획 입안코자 하며

2. 본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(14일간)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- 가. 공고내용 : 공고(안) 참조(별첨)
- 나. 공고방법 : 일간신문 2화 계계(조간, 석간 각1회)
- 다. 공고규격 : 2단 x 7cm
- 라. 공람장소 :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재개발과
- 마. 공고예산
 - 1) 예산액 : 청구액 지급
 - 2) 예산과목 : (도시재개발사업기금)관리비, 관리비, 관리비(수용비및 수수료)
 - 3) 지출방법 : 공고후 한국언론회관 청구에 의거 직불

첨부 : 1) 공고(안) 1부
2) 도시계획 입안도서 1부. 끝.

3-1 133

원본대조필

133

(제2안)

수신 공보2담당관

제목 신문게재의뢰

1. 별첨 도시계획(안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신문에 공고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내용 : 공고문 참조(별첨)

나. 공고방법 : 일간신문 2회 게재(조간,석간 각1회)

다. 공고규격 : 2단 x 7cm

라. 공람장소 :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재개발과

마. 공고예산

1) 예산액 : 청구액 지급

2) 예산과목 : (도시재개발법사업기금)관리비, 관리비, 관리비(수용비및 수수료)

3) 지출방법 : 공고후 한국언론회관 청구에 의거 직불

첨부 : 공고문 3부. 끝.

재 개 발 과 장

(제3안)

수신 동대문구청장

참조 도시정비과장

제목 도시계획(안)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

1.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일대(청량리구역) 도심지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 통보하니 도시계획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입안지 표시등 도시계획 업무에 참고하고,

2. 관련서류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기 바라며, 공고문사본을 구청 및 동사무소등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반상회등을 통하여 공고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랍.

3-2

134

원본대조필

134

- 첨부 : 1) 공고문 사본 1부
2) 입안도면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4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도시계획 도심지개발구역 추가지정 입안 및 공람공고 통보

우리시 관내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일대(청량리구역) 도심지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'94 제8차('94.10.18)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농동 624, 용두동 10번지일대 일부지역을 추가 하는것으로 수정가결되어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람공고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귀부서의 의견을 '94.11.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본 기한내 의견통보가 없을시는 해당 사항 없는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.

- 첨부 : 1) 공고문 1부
2) 입안도면 1부. 끝.

재개발과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

원본대조필

3-3 135

135

도시계획 1994. 11. 10 제 240 호		
담당자	인계용사제정	인계용사제정
윤	김	김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 공고 제1994- 266 호

도시계획(안)(도심지재개발구역지정)공람공고

1. 우리시 도심지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(안) 내용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. 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아래 공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994년 11월 10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람기간: 1994. 11. 10 ~ 1994. 11. 23 (14일간)

나. 도시계획(안) 내용

구분	도시계획(안)	위 치		면적(㎡)	비 고
도시계획사업	도심지재개발구역지정	청량리구역	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일대 (전농동624.용동10번지등)	87,986.9	도면생략

다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

전화 731-6357, 6358

원본대조필

136

136